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음식점업 업종 특화)」

1차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원활한 온라인 판로 확장을 위한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음식점업 업종 특화)」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모집 개요

※ 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중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필수교육 이수방법 아래 참고)

* 교육 이수를 위한 사전 공고기간 : '22.6.13.(월)~6.22.(수)
사업 접수 기간 : '22.6.23.(목) 오전 10시부터 진행

- ☐ 사업명 :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음식점업 업종 특화)」
- ☐ 사업목적 : 비대면·온라인 거래량의 증가에 따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배달 O2O 플랫폼 진출 지원
- ☐ 지원대상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교육' 필수과정을 이수한 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외(☞ 상세내용 12p 참고)
- ☐ 지원규모 : 6,000개 업체 (※ 2차 : 8월중, 4,500개 모집 예정)
- ☐ 지원내용 : O2O 플랫폼(3개사) 활용 시 필요한 홍보·광고비, 배달비 지원 (국비 기준 : 소상공인 당 20만원 한도)
 - 국비 이외, 플랫폼사 자체적으로 상생차원에서 홍보·광고비, 배달비, 소비자 할인쿠폰 등을 추가 지원

< O2O 플랫폼(3개사) 및 지원 내용 >

O2O 플랫폼	지원규모	지원항목	상세 지원내용	
			정부지원	플랫폼사 상생지원
배달의민족	2,000개	① 홍보·광고	20만 비즈포인트 제공 (울트라콜, 배민상회에서 사용 가능)	10만 비즈포인트 제공 (울트라콜, 배민상회에서 사용 가능)
		② 배달비* (배민1)	20만원 상당 배달비 지원 (배달건당 900원 이내 지원)	10만원 상당 배달비 지원 (배달건당 900원 이내 지원)
위메프오	2,000개	① 홍보·광고	5,000원 할인쿠폰 40매 지원 (2만원 이상 주문시 사용가능)	5% 소비자 페이백 지원
		② 배달비	20만원 상당 배달비 지원 (배달건당 1,000원 지원)	1% 소비자 페이백 및 2% 할인쿠폰 200매 지원 (최대 3,000원 할인)
쿠팡이츠	2,000개	① 홍보·광고	2,000원 할인쿠폰 100매 지원	배너광고 지원

* 배달의민족·배달비 항목을 신청하는 경우, 배민1 기본형, 배달비 절약형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 단 지원기간 중 통합형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불가

-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상세 및 추가내용은 6p, 4.기타사항 참조)
 - (플랫폼사) 3곳 중 1곳만 선택 가능하며, 플랫폼사별 선착순 마감에 따라 일부 플랫폼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항목) O2O플랫폼 별 지원항목 중 1개만 선택 가능하며, 선택한 서비스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중도 변경 불가
 - (중복지원 배제) '22년 상반기, O2O플랫폼 진출지원 사업(자유형)을 지원받은 경우 금번 사업에는 신청 불가
 - (신청 접수)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교육 필수과정 이수자 대상(수강방법 3p 참조) 사업 접수기간 내 선착순 마감이며, 자격검토 후 대상자 최종 확정

2. 필수교육 수강 신청방법 및 주요 강의 내용

□ 수강 채널 및 신청 방법

① 소상공인 온라인 아카데미 (<http://sbiz.learningfactory.c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탐색 → 「필수교육」 수강신청 → 학습 → 「필수교육」 수강 및 이수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 가입하여 교육수강 필수

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제휴기관 → 온라인혁신실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교육 e러닝 과정) → 「필수교육」 수강 및 이수

③ 가치샵시다 플랫폼 (<https://www.valuebuy.kr>)

-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진출 배움터 (소진공 교육 안내) → 제휴기관 강의 → 「필수교육」 수강 및 이수

* 가치샵시다 플랫폼 내 '온라인 진출 배움터(소진공 교육 안내)'는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로 연결(링크 방식)되어 있으며, 기존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가입 필요 없음

□ 주요 강의 내용 (10차시, 5시간)

차수	강의명	차수	강의명
1	온라인 시장의 이해, 온라인 진출의 필요성	6	판로 채널 개본 특징 배우기(O2O플랫폼 편)
2	온라인시장 진출 성공사례 온라인 시장 진출 기대효과	7	온라인 판매를 위한 서류준비
3	판로 채널 개본 특징 배우기(온라인쇼핑몰 편)	8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정산 등 특화 차별점 공유
4	판로 채널 개본 특징 배우기(스마트스토어 편)	9	제품 스토리 페이지 만들기 1
5	판로 채널 개본 특징 배우기(V커머스 편)	10	제품 스토리 페이지 만들기 2

3.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 경영성장 → O2O 지원 사업 → 페이지 하단 O2O 지원 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자가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스캔본 첨부 → 사업신청

** **접수확인** : 경영성장 → O2O 지원 사업 → 페이지 하단 O2O 지원 사업 접수 확인

□ 신청 기간 : 2022. 6. 23.(목), 10:00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외 접수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및 제출*

* 신청 시 온라인 작성 : ①②③ / 신청 시 스캔본 제출 : ④⑤

- ① 소상공인 여부 자가진단서(참고1)
- ②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신청서(참고2)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고3)
- ④ 사업자등록증(스캔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발급방법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사업신청 일자보다 이후여야 합니다.
- 예시처럼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 확인서 발급사이트
→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소상공인확인서 예시
(소상공인 표기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중소상공인**]

이 단서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처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일자 : [발급일자]

유효기간 : [유효기간]

비고 : [비고]

중소벤처기업부장

□ 지원 절차

① 사전공고 (6.13~6.22)	② 사업신청 (6.23~예산소진시)	③ 자격검토 (6.23~)	④ 서비스 제공 (~12.31)
사업신청 정보제공	온라인신청	사업 신청 소상공인 대상 자격요건 확인	O2O 플랫폼별 특화 서비스 지원
공단	소상공인 → 공단	공단	O2O 플랫폼 → 소상공인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① 사전공고 : 사업신청에 대한 정보 사전제공
- ② 사업신청 : 소상공인마당을 통한 온라인 사업 신청
 - * 공고 기간 내 선착순 마감 예정
 -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로 가입 필수
- ③ 자격검토 : 소상공인 및 교육 이수 여부 확인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④ 서비스 제공 : O2O 플랫폼별 사업 선정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제공
 - * 서비스제공이 즉각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이 직접 O2O 플랫폼사에 가입 **必**
 - ** O2O 플랫폼에서 각 소상공인에게 제공 서비스 이용 관련 개별 안내 예정
이므로 선정 확인 연락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사항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온라인 아카데미 또는 소상공인지식배움터를 통한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교육 中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을 신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가 필수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사업신청 일자보다 이후여야 합니다.
 - 예시처럼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사이트
→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 본 사업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중 미비서류에 대해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기간(~22.12.31)이 종료되면, 지급된 포인트 등은 소멸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해당 O2O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 후 O2O 플랫폼 변경 및 취소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O2O플랫폼의 서비스 지원 항목은 중도 변경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마당을 통한 회원가입 시 본인명의로 사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소진 시 까지 선착순 마감이므로, 지원 규모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향후 공고 예정인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자유형, 음식점업 특화 지원 등)에 참여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본 사업 수혜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제37조(과태료)
-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1곳만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다수 업체 중복 지원·수혜 불가)
-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 사업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ex. 공고기간 내 'A' O2O 업체 지원 후,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으로 'B' O2O 업체 지원을 중복해서 신청 하는 경우
- 공동명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되어있는 대표자로 신청
* ex.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홍길동 외1 경우, '홍길동'으로 사업 신청
- 사업 신청 시 정보 입력 오류, 사업자등록증 미첨부 등 정보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처

- 사업신청 및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발급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O2O 플랫폼 가맹 및 지원 내용 문의
 - 우아한형제들 고객센터 (☎ 1600-0987(유료)),
(☎ 080-849-0987(무료))
 - 위메프오 고객센터 (☎ 1833-4877)
 - 쿠팡이츠 고객센터 (☎ 1600-9827)

[참고]

※ 아래 참고서식은 사업 지원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이니, 자료의 양식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여부 자가진단서
2.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5.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참 고

020 사업 신청서 양식(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작성)

1. 소상공인 020 진출 지원 사업 자가진단서

☐ 아래의 내용 중 '아니오'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필수 값 지정)

상세 내용	해당 여부
①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예 ☐ 아니오
②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입니까?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 단, 업종이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인 경우 10인 미만 가능	☐ 예 ☐ 아니오
③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입니까? * [참고5]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참조 * 2021년 기준 연평균 매출액 * 2022년 이후 신규 창업자는 매출액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예 ☐ 아니오
④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십니까? * [참고4]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 예 ☐ 아니오
⑤ 현재 영업 중이십니까? *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2. 소상공인 020 진출 지원 사업 신청서

I. 기본 정보

신청인(대표자)		생년월일 (yyyy-mm-dd)	
전 화(사업장)		휴대폰	
e-mail			

II. 사업장 현황

업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개업일	
업 종	(대분류)	(중분류)	
상시근로자수	(명)	연 평균매출액 (2021년 기준)	만원

III. 희망 020 플랫폼 신청

020	배달의민족		위메프		쿠팡이츠
선택	홍보·광고	배달비 (배민1 이용 必)	홍보·광고	배달비	홍보·광고
	☐	☐	☐	☐	☐
지원내용	사업 공고문 내 020 플랫폼별 지원내용 참고 * 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링크				

IV. 증빙 서류

첨부파일(필수)	: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파일(필수)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1부

2022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상공인 O2O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O2O플랫폼 기업)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매출액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O2O지원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O2O플랫폼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치 및 활용, O2O 지원사업 운영
- O2O플랫폼 기업 및 운영업체 : 소상공인 O2O 서비스 지원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매출액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O2O지원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4.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유통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악곡, 한악곡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2.12.)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설소 * 시각장애인인 운영자는 안마원 및 안마시설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설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5.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